

202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문위원 **추가 모집** 안내

-노숙인이용시설-

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 운영을 위해 현장평가에 참여할 역량 있는 전문가를 평가 전문위원으로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 모집분야 및 인원

모집분야

- 2026년 노숙인이용시설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

모집인원

- 4명

2 지원기간

- 2025. 9. 12.(금) ~ 9. 18.(목) 18:00

3 지원자격

자격기준

구분	자격요건
현장	1)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2)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총 10년 이상이면서 노숙인이용시설 근무경력 3년 이상자 3)공고일 기준(2025. 9. 12.) 노숙인이용시설 최고중간관리자 이상자 ※사회복지시설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※노숙인이용시설: 종합지원센터, 일시보호시설, 쪽방상당소 •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활동 필수사항

- 평가 전문위원 교육과정(40시간) 100% 참여
 - 기초교육: 평가전년도(2025년, 총 17시간)
 - (1일차) 2025. 11. 17. (월) 09:00 ~ 19:00 (9시간)
 - (2일차) 2025. 11. 21. (금) 09:00 ~ 18:00 (8시간)
 - 심화교육: 평가당해년도(2026년, 총 23시간)

※경력위원(동종시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문위원 경험이 1회 이상인 자)의 경우 일부과목 수강선택 가능

- 현장평가단 위촉 후 평가대상시설 현장평가 수행(6회 내외)
 - 평가대상시설 제출 자체평가서 및 서류 사전검토
 - 평가대상시설 현장방문평가 수행(1일 1개소 원칙, 10:00 ~ 17:00)
 - 평가대상시설별 결과보고서 작성(시스템 입력 포함) 등 평가 관련 제반업무 수행
 - 평가 관련 각종 회의 참석(검토회의 등)
 - 평가 이후 전문위원 관련 컨설팅 및 강의 진행(필요시)

4

지원방법

지원방법

- 지원서 작성 후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 이메일 제출
(specialedu@welfare.seoul.kr)

제출서류

- 지원서 1부
- 증빙서류 1식(합격자에 한함)

유의사항

- 지원서 작성 후 전자서명 혹은 자필 서명하여 pdf 저장 및 제출
- 메일제목 및 파일명 통일(노숙인이용시설, 성명)

5

선정방법

□ 선정방법

○ 선정기준

- 세부기준에 의거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값 산출(고득점자 순으로 선발)
- 60점미만 미선정, 동점자의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
- 최종 선발 시, 시설유형 균형과 법인 고려

기준 항목	배점(100점만점)	세부 내용
전문성	40점	① 평가 및 심사위원 활동 경력 ② 노숙인이용시설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③ 주요 수행 업무 ④ 자격 및 면허사항
활동 적합성	40점	① 지원 동기, 평가 전문위원으로서의 강점 ② 향후 활동 계획(소속기관의 사전 동의 등)
지원서 충실성	20점	① 필수 기재 내용포함 여부 ② 논리적 전개성

6

전형절차 및 일정

※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모집 공고 및 접수 : 8.27.(수)~ 9.10.(수)
-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추가 모집 공고 및 접수 : 9.12.(금)~ 9.18.(목)
- 지원 자격 충족여부 내부검토 : 9월
-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선정심사 : 9~10월
-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합격자 발표 : 10.13.(월) 예정
-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기초교육(17시간) : 11월
- 평가 전문위원(학계위원) 추천 및 구성 : 12월 이후
- 평가 전문위원 심화교육(학계·현장위원) : 2026. 상반기
- 평가 전문위원 현장평가단 위촉 *평가운영위원회 : 2026. 상반기

7

기타사항

서류관련

-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, 지원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, 위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활동 공통기준」 안내

- 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활동 공통기준」(복지정책과-16354(2025.7.10.)호)에 따라 현장평가위원 활동은 겸직허가 대상으로, 현장평가위원 위축(2026년) 이후 겸직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
※ 겸직허가 시 외부활동 월 한도(12시간)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음

[참고]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활동 공통기준 일부

외부활동 기준

- 시설 종사자가 소속 기관을 전제로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활동으로, 공문(또는 이메일)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업무 홍보,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등 목적으로 강의, 자문, 심의,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

겸직허가 대상 및 절차

- (겸직허가 대상) 3개월 이상의 정기활동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활동
- (겸직신고 절차) 신고 및 승인 ⇒ 지자체 보고
 - (시설장) 법인의 대표에게 신고 및 승인 ⇒ 지자체 보고 (희망이음 활용)
 - (종사자) 시설장에게 신고 및 승인 ⇒ 지자체 보고 (희망이음 활용)

복무관리

- (사례금 받은 외부활동) 업무관련 외부활동은 근무시간 내 출장 신고하되 출장비 미지급
 - 사례금을 받지 않는 업무관련 외부활동은 출장비 지급 가능
 - ※ 시설이 정한 기준 출장비 기준으로 지급 가능
 - 외부활동 허가기준 위반시, 법인대표 및 시설장은 외부활동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 시행

관련문의

-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인증센터 평가팀 (02-6353-0499)

[붙임] 202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전문위원(현장위원) 지원서 양식 1부. 끝.